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668호

2018년 12월 14일 (금)

차 례

입법예고

- 파주시 공고 제2018-1689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

고 시

- 파주시 고시 제2018-252호 도로명주소 고시 4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파 주 시

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14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2. 제정사유

- 「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전부개정에 따라 「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「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'교육문화회관'을 '파주시 평생학습관'으로 명칭변경(안 제2조)
- 나. 시설 사용신청, 시설 위탁운영, 강좌 수강신청, 수강료·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 등 명시 (안 제3조에서 제8조)
- 다. 시설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, 양도 및 전대 금지, 소지품 반입 제한 규정 명시 (안 제9조에서 제11조)
- 라. 강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명시(안 12조, 제13조)

4. 자치법규안

- 시행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18년 12월 24일 까지(1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Fax 등

-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‘입법예고’에 전문 게시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‘입법예고’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주소 · 성명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과 (교육운영팀)

-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금정3길 40 (우10924)
- 전화번호 : 031-940-4441 / Fax 031-940-4449

입법예고 의견제출

조례명 :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○ 성 명: 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 (연락 가능한 자택, 사무실, 휴대폰 등)

의견 제출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폐지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2. 14.

파주시장

○ 도로명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로 1311-83 외 3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(☎940-489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12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